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0. 11. 18.(목) 15: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무선데이터 서비스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10-67-275~277)

-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심인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추가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안동MBC 등 6개 지역 지상파 DMB 사업자 - (2010-67-278)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의거, '10. 12. 31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문화방송(주) 등 6개 지역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안동문화방송(주) 등 5개 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고, (주)강원민방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보류하기로 의결함.

※ (주)강원민방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상정·의결(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

○ 주요 내용

① 안동문화방송(주) 등 5개 사업자의 방송국 재허가 조건

- 최초 지상파DMB 사업 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방송보조국 구축계획 (2007~2010년)을 아래 표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기한은 준공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명	2011년 12월까지	2012년 6월까지	2012년 12월까지	합 계
안동문화방송(주)	1개국 (2개국)	(2개국)	(2개국)	1개국 (6개국)
(주)케이엔엔	1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5개국)
(주)대구방송	1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2개국)	2개국 (6개국)
(주)광주방송	2개국	1개국	(2개국)	3개국 (2개국)
(주)제주방송	(1개국)			(1개국)

※ ()는 출력 100W 이하 방송보조국, 그 외는 출력 1~2kW 방송보조국

- 위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포함하여 2013년까지의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재허가 이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2013년까지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동문화방송(주) 등 5개 사업자의 방송국 재허가 유효기간 : 3년

3) 2011년도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건 - (2010-67-279)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원안대로 사회복지분야의 한국직업방송 등 3개 분야 9개 채널을 2011년도 공익채널로 선정하기로 의결함.

※ 2011년도 공익채널의 유효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 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함

- 2011년도 공익채널 선정결과 주요 내용

① 사회복지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방송(Work TV)
(주)희망복지방송	복지TV
(주)유로티브이	육아방송(Korea Childcare Broadcasting)

② 과학·문화 진흥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주)와이티엔	사이언스TV(SCIENCE TV)
(주)아르떼	예술TV Arte

③ 교육지원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플러스1 수능전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English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플러스2 중학/직업

사. 보고사항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계 등이 제기한 홈쇼핑 채널 정책 관련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접수함.

※ 수정내용 :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되,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1안)과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2안)으로 구분'을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1안)과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2안)으로 구분'으로 수정

o 주요 내용

① 정책 추진방향

① 기존 홈쇼핑 PP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선

- 홈쇼핑 PP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내용을 구체화 하고 이행 여부를 재승인 심사 시 적극 반영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납품업체 민원 처리기구 마련, 방송법령 개정 등

②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 중소기업 지원, 시청자·소비자 복지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

③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강화

- 홈쇼핑 PP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 및 판매수수료 인하 등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강화

※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홈쇼핑 맞춤형 우수 중소기업제품 발굴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추진

②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방안

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성격

- 사업자 수

·(1안)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2안)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 채널 운영

·(1안) 중소기업제품을 100% 편성하는 방안

·(2안) 중소기업제품을 일정비율(80%) 이상 편성하는 방안

- 채널 소유

【신청자격의 범위(최대주주)】

·(1안) 중소기업 및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제한하는 방안

·(2안) 중소기업, 공공적 성격의 단체 및 관련 민간단체로 제한하는 방안

- (3안)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 경우,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거나 대기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검토 가능)

※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기존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과락처리

【기존 홈쇼핑 PP의 지분참여】

- (1안) 전면 제한하는 방안
- (2안) 주요 주주(5% 이상)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 (3안)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 (4안) 허용하는 방안

※ 기존 홈쇼핑 PP(특수관계자 포함)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1안, 2안, 3안)을 선택할 경우 구체적인 제한방안은 세부심사기준에 반영

② 심사기준 구성 및 배점

- 심사기준 구성

·심사사항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규정 등을 고려하여 5개, 심사항목은 총 20개로 구성

- 심사사항별 배점

·기존 '01년 홈쇼핑 PP 사례를 참고하되, 중소기업 전용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 사항별 배점 비중을 조정

< 심사사항별 배점 >

심사사항	중기전용 홈쇼핑 PP	2001년 홈쇼핑 PP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30% (+5)	2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5% (+5)	20%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5%	2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	1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10% (-10)	20%

③ 심사기준 관련 주요사항

- 복수의 신청법인에 대한 중복 참여

- (1안) 5% 이상 참여 시 타 컨소시엄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방안
- (2안) 5% 이상 참여 시 타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
- (3안)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안

- 승인 최저점수 설정 : 전체 총점은 70% 이상으로 설정
 - (1안) 심사사항별 60% 이상, 핵심 심사항목에 대해 5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
 - (2안) 핵심 심사항목에 대해서만 6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
 - (3안) 심사사항·심사항목별 최저점수를 설정하지 않는 방안
- 납입자본금
 - '중소기업 전용'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진 홈쇼핑 PP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1,000억 원을 제시
- 출연금
 - (1안) 최소 출연금 규모는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
 - (2안) 특정 금액으로 지정하는 방안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 11. 24(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8:27)

※ 17:00 정회, 17:15 속개